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809
----------	-------

발의연월일 : 2026. 5. 6.

발 의 자 : 송옥주 · 윤준병 · 임미애
전종덕 · 서삼석 · 황명선
김현정 · 이개호 · 문대림
소병훈 의원(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의사상자의 범위를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어, 구조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상이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였다는 사실 자체에 대하여는 예우와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음. 실제로 구조행위 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체적 부상 중심의 판단 기준으로 인해 그 피해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거나 낮은 등급으로 인정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정신적 손상을 입은 경우와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지 않은 경우에도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의상자에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정신적 손상을 입은 사람이 포함되도록 하고, 신체적·정신적 손상 정도에 따른 등급을 결정하도록 함(안 제2조제3호 및 제5조제6항 등).

나.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한 사람 중 의사자나 의상자가 아닌 사람을 구조행위자로 인정하고 영전의 수여, 물건의 멸실·훼손에 대한 보상금 지급, 고궁 등의 이용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7호, 제5조, 제7조, 제9조 및 제15조 등).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을 “구하기 위하여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한”으로, “의사상자”를 “의사상자 등”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부상”을 “신체적·정신적 손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신체상의 부상”을 “신체적·정신적 손상”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구조행위자”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한 사람 중 의사나 의상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이 법에 따라 구조행위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체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을 “체포하기 위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을 각각 “구하기 위한”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조치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을 “조치를 하기 위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 중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을 각각 “구하기 위한”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부상”을 “신체적·정신적 손상”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

을 입는”을 “구하기 위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을 “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부상”을 “신체적·정신적 손상”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의사상자”를 “의사상자 또는 구조행위자”로, “부상등급”을 “손상등급”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부상등급”을 “손상등급”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 중 “의사상자”를 각각 “의사상자·구조행위자”로 한다.

제5조제1항, 제2항, 제3항 및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의사상자”를 각각 “의사상자 또는 구조행위자”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부상 정도”를 “신체적·정신적 손상 정도”로, “부상등급”을 “손상등급”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중 “부상등급”을 “손상등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부상이”를 “신체적·정신적 손상이”로, “부상등급”을 각각 “손상등급”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부상등급”을 “손상등급”으로 한다.

제7조 중 “의사상자”를 “의사상자 및 구조행위자”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부상”을 “신체적·정신적 손상”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의사상자”를 각각 “의사상자 또는 구조행위자”로, “의상자 또는 의사자유족”을 “의상자, 구조행위자 또는 의사자유족”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전단 중 “의상자”를 “의상자 또는 구조행위자”로 한다.

제11조제1항 단서 중 “신체상의 부상”을 “신체적·정신적 손상”으로

한다.

제12조 단서 중 “신체상의 부상”을 “신체적·정신적 손상”으로 한다.

제13조 단서 중 “신체상의 부상”을 “신체적·정신적 손상”으로 한다.

제15조 중 “의상자·의사자유족”을 “의상자·구조행위자·의사자유족”으로 한다.

제18조 중 “의사상자 인정결정”을 “의사상자·구조행위자 인정결정”으로, “날을 말한다”를 “날, 제6조에 따른 손상등급 변경결정이 있었던 경우 변경결정의 통보를 받은 날을 말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 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및 제1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 구조행위를 한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 구조행위를 하다가 정신적 손상을 입어 그 정신적 손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는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의사자 인정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이 법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부상등급은 이 법에 따른 손상등급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상등급 결정을 받은 의상자는 이 법에 따라 손상등급을 다시 결정하여줄 것을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손상등급을 다시 결정하여줄 것을 신청한 경우 종전의 제18조에도 불구하고 손상등급 결정을 통보받은 날(교육보호의 경우 그 통보를 받은 당시에 교육보호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후에 교육보호사유가 발생한 날을 말한다)부터 3년이 경과하는 날의 전일까지 제8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지급·의료급여·교육보호 및 취업보호를 신청할 수 있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u>의사상자</u> 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u>구하기 위하여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한</u> ----- ----- ----- ----- ----- <u>의사상자</u> 등-----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의사자(義死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의상자가 그 <u>부상</u> 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이 법에 따라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2. ----- ----- ----- <u>신체적·정신적 손상</u> ----- ----- ----- -----.
3. “의상자(義傷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	3. -----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
상의 부상을 입어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 법에 따라 의상자
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4. ~ 6. (생략)

<신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적용한다.

1. 강도·절도·폭행·납치 등
의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그
범인을 체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2. 자동차·열차, 그 밖의 운송
수단의 사고로 피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3. 천재지변, 수난(水難), 화재,

-----신
체적·정신적 손상-----

-----.

4. ~ 6. (현행과 같음)

7. “구조행위자”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한 사람
중 의사자나 의상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이 법에 따라 구조행위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

-----.

1. -----

----체포하기 위한-----

2. -----

----구하기 위한-----

3. -----

건물·축대·제방의 붕괴 등으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구하
기 위한-----

4. 천재지변, 수난, 화재, 건물
· 축대·제방의 붕괴 등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불특정 다수
인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를 하다가 사망하
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4. -----

-----조치를 하기 위한-----

5. 야생동물 또는 광견 등의 공
격으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
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5. -----

-----구하기 위한-----

6. 해수욕장·하천·계곡, 그
밖의 장소에서 물놀이 등을
하다가 위해에 처한 다른 사
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
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6. -----

-----구하기
위한-----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구조행위를 위하
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상

7. -----

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하던 중에 사망하거나 <u>부상을 입은 때</u>	----- ----- <u>신체적 · 정신적 손상</u> -----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형태의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 신체 또는 재산을 <u>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u>	8. ----- ----- ----- <u>구하기 위한</u>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 ----- ----- -----.
1.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위해에 처한 사람에 대하여 구조행위를 <u>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u>	1. ----- ----- ----- <u>한</u> -----
2. 구조행위 또는 그와 밀접한 행위와 관련 없는 자신의 중대한 과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하거나 <u>부상을 입은 사람</u>	2. ----- ----- ----- ----- <u>신체적 · 정신적 손상</u> -----
제4조(의사상자심사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 · 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	제4조(의사상자심사위원회) ① -- ----- ----- -----

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의사상자의 인정 및 의상자의 부상등급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의상자의 부상등급 변경에 관한 사항

3. (생략)

4. 의사상자·의사자유족 및 의상자가족의 예우에 관한 사항

5. 의사상자 및 의사자유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6. (생략)

② ~ ⑤ (생략)

제5조(인정신청 등) ① 이 법의 적용을 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소지 또는 구조행위지를 관할하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의사상자 인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

-----.

1. -----의사상자 또는 구조행위자-----손상등급

2. -----손상등급-----

3. (현행과 같음)

4. 의사상자·구조행위자·의사자유족-----

5. 의사상자·구조행위자-----
--

6.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5조(인정신청 등) ① -----

-----의사상자 또는 구조행위자-----.

② -----

항에 따른 인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사상자 인정 여부의 결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할 구역 안에서 구조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사상자 인정 여부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생략)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60일 이내에 의사상자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구조행위의 사실 여부 확인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항에

의사상자 또는 구조행위자-----
-----.

③ -----

-----의사상자
또는 구조행위자-----
-----.

④ (현행과 같음)

⑤ -----

-----의사상자 또는
구조행위자-----
-----.

-----.

⑥ -----

따라 의사자로 인정하는 결정을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상 정도에 따른 등급(이하 “부상등급”이라 한다)을 함께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부상등급 변경신청) ① 의사자가 그 구조행위로 인하여 입은 부상이 악화되어 제5조제6항에 따라 결정된 부상등급의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부상등급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5조제2항 및 제5항은 제1항에 따른 부상등급 변경의 신청절차 및 인정 여부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7조(영전의 수여 등) 국가는 의사상자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사회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상훈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전의 수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체적·정신적 손상 정도-----
-----손상등급-----
-----.

제6조(손상등급 변경신청) ① ----

----신체적·정신적 손상이----
-----손상등급-----

-----손상등급-----
-----.

② -----
-----손상등급-----

-----.

제7조(영전의 수여 등) -----의사상자 및 구조행위자-----

-----.

자·자녀·부모·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으로 지급한다. 이 경우 같은 순위의 유족이 2인 이상인 때에는 보상금을 같은 금액으로 나누어 지급한다. ② (생 략) 제11조(의료급여) ①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라 「의료급여법」이 정하는 의료급여를 실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u>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의상자</u>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 략) 제12조(교육보호) 의사자의 자녀 및 의상자와 그 자녀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정하는 교육급여를 실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u>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의상자 및 그 자녀</u>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취업보호) 의상자·의사자유족 및 의상자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	----- ----- -----. ----- -----.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의료급여) ① ----- ----- ----- -----. ----- -----<u>신체적·정신적 손상</u>----- -----.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교육보호) ----- ----- ----- -----. -----<u>신체적·정신적 손상</u>----- -----. 제13조(취업보호) ----- ----- ----- -----
---	--

보호를 실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의사자 및 그 가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고궁 등의 이용 지원)의 상자·의사자유족 및 의사자가 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

제18조(신청기간의 제한) 제8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지급·의료급여·교육보호·취업보호 및 장애보호는 의사상자 인정결정을 통보받은 날(교육보호의 경우 그 통보를 받은 날 당시에 교육보호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후에 교육보호사유가 발생한 날을 말한다)부터 3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다.

-----.
-----신체적·정신적 손상-----
-----.

제15조(고궁 등의 이용 지원)의 상자·구조행위자·의사자유족

-----.

제18조(신청기간의 제한) -----

의사상자·구조행위자 인정결정

-----날, 제6조에
따른 손상등급 변경결정이 있
었던 경우 변경결정의 통보를
받은 날을 말한다-----
-----.